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221

JCCT 2022-5-26

기본소득론 고찰 : 유형과 쟁점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Basic Income: Focusing on Types and Debating Issues

김신영*, 김진숙**

Sin-Young Kim*, Jin-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주요어 :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유형, 기본소득 도입 쟁점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deal with so-called basic income policy that Korea society has paid a great amount of attention to in welfare policy area. As an introduction, the definitions of basic income policy, and her natures and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foundation will be covered. Then, this study will discuss current debating issues upon basic income policy around the world such as basic income policy vs pre-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basic income policy and labor supply, the potential effect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as an actual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investigate major criticisms on basic income policy and suggest viable paths that interested researcher should take for further study on basic income.

Key words : Basic Income Policy, Types of Basic Income, Major Issues on Basic Income Policy

1. 기본소득 개괄: 정의, 특성, 이념

전(全)지구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정기적인 현금지급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 Network: BIKN)는 2016년 기본소득 총회에서 기본소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로

*정회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5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9일

Received: April 5, 2022 / Revised: April 23, 2022

Accepted: April 29, 2022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정의 내린 바 있다.

기본소득의 특징으로는 1) 정기성, 2) 현금 지급, 3) 개별성, 4) 보편성, 5) 무조건성 다섯 가지가 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부연설명 하자면, 먼저 ‘정기성’이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해서 지급됨을 의미하며, ‘현금지급’이란 문자 그대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으로 제한하는 이용권이 아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별성’은 지급의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임을 의미하며, ‘보편성’이란 기본소득 특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지급에 노동시장 참여나 참여의사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Van Pariis(2006)에 주창되어 현재 기본소득운동을 지탱하고 있는 첫 번째 이념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이라는 구호로 표현되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결합이다. 우파의 개인주의 및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자유의 대가로 주어지는 일정 수준의 불가피한 불평등에 반대하며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불평등한 현실적 조건들의 제거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의 주요 특징은 1)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의 보장구조가 존재하고, 2) 자기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3) 기회의 순차적 최소극대화의 원칙(leximin opportunity)—순차적 최소극대화의 원칙에서 최소극대화의 원칙이란 최악의 경우 발생 가능한 손실(최대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말하며 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자유 사회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장 적은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두 번째 이념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구호로 표현되는 공적인 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분배의 문제는 사회정의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이슈이며 사회 구성원 각자의 몫을 구성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는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가 되어온 지 오래이다. 분배의 문제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영이 주목하는 이슈는 ‘공동의 부(common wealth)’ 중에서도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과 같은 자연적인 공동의 부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공동의 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공동분배를 주장한다. 다만 공동의 부를 어떤 식으로 모두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즉 분배를 위한 합당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2].

II. 기본소득의 유형

기본소득 관련 문헌들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본소득 유형은 대략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을 매우 엄격한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 의사나 실제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영토 내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공적부조 포함)제도에서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공적연금, 사회수당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가사, 보육 등과 같은 유형의 노동까지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사회는 이에 대한 보상을 기본소득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현실적 및 이념적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설정이나 재원확보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에 해당하며 지급조건과 관련된 노동의 의무는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대표적 문제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몇 가지 유형의 수정형 기본소득을 제안해 왔다.

먼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불충분함을 기본소득의 보완하는 유형으로 ‘차액소득보장제(Make-up Guaranteed Income)’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설정한 후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기존 사회보장수준 간의 차액만을 기본소득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으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제도는 노동에 의한 소득과 그 사회가 정한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를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하여 매꾸게 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함과 동시에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음으로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은 Atkinson (2015)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18세 이상 모든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유의한 활동에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3]. 사회적으로 유의한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교육, 자원봉사, 돌봄노동 등이 포함되며 국가마다 활동의 범위는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첫 번째, 윤리적 문제로 지적되는 '무임승차' 상황을 막기 위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지급하지 않음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소득'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갖는 노동에 대한 협소한 개념을 극복하고 노동이 유용성을 유급노동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로 노동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다음으로 '일시적 기본소득(Temporary Basic Income)'은 생애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되며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Offe(1997)에 따르면, '일시적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제도로서 모든 시민은 일종의 시민권으로서 소위 '안식기간 계좌(sabbatical account)'에 대한 자격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Offe(1997)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부조 제도 하에서 지급하는 급여 수준보다 높은 액수를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모든 개인에게 만들어주고 18세 이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단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기본소득의 활용에 몇 가지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계좌 이용과 일시적 소비 등을 제한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필요 시점을 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5].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급부(Stakeholder Grant) 또는 사회적 지분 급여'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이

경제적 침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특정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예컨대 21세, 일률적으로 특정 액수를 지급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일종의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이다. 재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목적세를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 마지막으로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은 급여의 수준을 정부의 재정적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당장 어려울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기본소득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의 기본소득 유형을 소득 자산 조사여부, 노동의무 부과 및 무조건성 원칙의 측면에서 재구성 해보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데 반해, '차액소득보장'은 무조건성 원칙은 실현되고 있으나 소득자산조사의 실시로 인해 보편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부의 소득세'는 소득자산조사 실시, 노동의무 부과로 인해 두 가지 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여소득'의 경우 보편성의 원칙은 실현되고 있으나 노동의무 부과로 인해 무조건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 기본소득' 역시 보편성의 원칙은 실현되고 있으나 무조건성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분 기본소득'은 소득자산조사의 실시로 보편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무조건성 원칙은 실현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급부' 역시 보편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무조건성 원칙은 실현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의 핵심정신인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는 '차액 소득보장', '부의 소득세', '부분 기본소득'에서의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 급부' 역시 제도의 목적과 지향 지점이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철학과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7].

III.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들

이 장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현실에서의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 기본소득을 도입한 세계의 몇몇 국가나 지역 역시 기본소득 도입의 실험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기본소득이 여전히 관념적이고 이념형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실에서의 도입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

좌파 진영에 의해 주장되어온 기본소득의 핵심 정신은 ‘대안사회의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완전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비효율성이나 과도한 행정비용, 그리고 복지병 유발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파진영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완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수준과 관련하여 지급수준이 낮은 소위 ‘부분적 기본소득’의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충분치 못한 기존 공공부조제도나 여타 소득보장 목적의 사회보험제도와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부분적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와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은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전략에 속하게 된다.

2. 기본소득과 소비수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중 하나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민들의 소비수요능력의 감소가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유지시키는데 충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소비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성장과 고용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승수효과를 통해 다시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소득은 소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노동 수요를 증대시키며 경기를 진작시키게 된다.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과 소비수요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지역화폐를 통한 수당지급이나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의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 논리 등이 존재한다.

3. 기본소득의 기본성

기본소득의 기본성이란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핵심 용어는 ‘기본’이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답고 적절한 삶의 보장인데 과연 기본소득의 ‘기본’이 ‘인간답고 적절한 삶’과 동일한 의미인지는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기본’을 암시하는 현실 제도나 용어로는 ‘최저 생계비’, ‘국민 기본선’, ‘최저임금’, ‘평균 임금’, ‘중위소득’ 등이 존재하나 이것이 기본소득의 ‘기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학계나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조차도 기초적인 합의는 없는 상태로 보인다. 기본소득이 기본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의 첫 걸음은 해당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4. 기본소득과 재분배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중 하나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결함으로 지적되는 불평등과 재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원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재편, 고질적인 저성장과 고전적 노동의 종말 등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는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로써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과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뛰어 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원리는 ‘욕구’에 기반한다. 즉, 국가에 의한 사회적 급여의 지급은 욕구가 없고 자원이 충분한 집단으로부터 욕구는 있으나 자원이 불충분한 집단으로의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통해 이전되며 이 과정이 바로 재분배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적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내는 집단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기금이 생산집단인구에서 노령층으로 이전되며, 건강보험 역시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건강을 위협받는 집단으로 이전되게 된다. ‘욕구’에 의한 재분배는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반면, 원론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욕구’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로의 지급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일부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가 가지는 갖가지 자격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즉, 공공부조제도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자격요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일부 집단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게 되나, 기본소득은 자격요건의 부재로 인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며 이는 빈곤상태에서의 일정 수준 탈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재분배의 이슈는 기본소득의 재원마련과 지급 수준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2]. 국가 수준의 기본소득의 경우 재원 마련은 조세에 기반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의 누진적 성격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달라지게 된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을 높게 설정할수록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유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의 소득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인해 상당 수준의 누진세 정도가 아닌 이상 기본소득이 불평등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노동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면, 기본소득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임을 강조한다[8]. 기본소득은 임금노동과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계를 갖지 않으며 이러한 탈노동화 기능은 보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보다 의미 있는 일자리 또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근로유인(work incentive) 관련하여 역시 기본소득론자들은 공공부조제도가 소득과 복지급여를 연계시킴으로 인해 복지의 존으로 인한 소위 '빈곤함정(poverty trap)'을 유발시키는데 반해 기본소득은 노동유무와 무관하며 따라서 일할수록 전체 소득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유인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실업률 또한 낮아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은 저임금 일자리의 수용성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가속 또는 저소득층의 실업자화를 통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을 증가

시킨다는 실증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9].

6. 현실적 도입 가능성

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은 크게 경제적 충당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일단 기본소득이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면, 기본소득론자 어느 누구도 이념형적 기본소득, 즉 완전한 기본소득이 도입이 가까운 미래에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 정치인이 주장하는 기초생활비 수준의 매월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연간 3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이기에 기본소득 도입이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 한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론자들의 핵심 대응 논리는 1)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과 2)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로 요약된다. 국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복지비용 지출이 GDP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인 21%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상호 조정을 통해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먼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과 점진적 확대 논리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의 미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생활수준의 개선,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이념 구현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비판이 학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0]. 다음으로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방법으로는 누진세율 확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조세신설 등이 거론된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진영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들여가면서 부유층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기본소득이 도입 가능성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은 크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관계 설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아무리 적은 액수의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전 국민 대상이라는 보편성을 유지 할 경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과연 조세제도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겠는가와 증가한 조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지속되겠는가?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념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토대로 제시되는 ‘일하지 않을 실질적 자유’가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지속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공격도 존재한다. 그리고 소비증가를 통한 경기 진작에의 기여라는 기본소득의 효과 역시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도 존재한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도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강한 경로의존성을 가진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며 [11]. 부분적으로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기본소득 도입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진전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V. 소 결

이 장에서는 제도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 제도 자체의 윤리적 성격, 그리고 기존 노동가치관과의 충돌 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으로 소결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에는 자원조달 방법이 있다. 물론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국가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 수준은 유연하게 설정 가능하며 실제로 다양한 차원의 자원 마련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원 조달 방법으로는 기존 복지제도의 재원을 재구조화 하는 방법, 국채 발행을 통한 자원 조달, 국토보유세나 환경세, 또는 부유세 등과 같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주요 기업의 국유화 역시 몇몇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연간 550 만원의 ‘높은 기본소득 모델’과 연간 300 만원의 ‘낮은 기본소득 모델’ 모두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약 50%)보다 낮은 수준에서 도입이 가능함을 실증적 근거 제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의 지점은 윤리적

차원에 있다. 즉 조건부 기본소득이 아닌 완전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노동이 없는 최소 생활수준의 보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노동의 유인은 사라지면 산업시스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시스템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노동참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의 지점은 노동자체에 대한 근대적 관점이다. 물질문화로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성패는 비물질문화로서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의 조응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는 노동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일종의 의무이고, 따라서 노동 없이 주어지는 대가는 소위 불로소득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종의 배당금’ 개념에서 찾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는 누구나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각각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는 기여에 대한 배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전제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 더 나아가 평등원리 침해 가능성은 노동 참여나 기여와 무관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전체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즉 기본소득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정의 내릴 때 ‘기여’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 제도는 결국 노동하는 타인의 몫을 평등 추구의 구호 아래 착취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본소득에 의한 평등원리 침해’의 역설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References

- [1] <http://basicincome.org/basic-income>
- [2] Van Pariis, P., Basic Incomes: A Simple and Powerful Ideas for the 21st century, Wright, Erik(ed.),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Cornerstone for and Egalitarian Capitalism, New York: Verso, 2006.
- [3] Atkinson, A. B.,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London, 2015.

- [4] S.J. Cho, Gwangja. "Basic Income as Universal Welfare Institution", *The Issues of Basic Incomes and Alternative Society*, pp. 121-145, 2014.
- [5] Offe, C.,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s Right and Economic Resources", *Societal Cohesion and the Globaliz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pp. 81-108, 1997.
- [6] Ackerman. B. & Alstott. A., *The Stakeholder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999.
- [7] J.H. Seo, G.J. Cho, "The Construction of New Distribution System: Basic Income and Income for Social Share", *Social Security Research*, Vol. 24, No. 1, pp. 27-50, 2008.
- [8] H.S. Yoon, "Basic Income, Can This Be an alternative to welfare state?", *Critical Social Research*, No. 54, pp. 81-119, 2017.
- [9] K.Y. Cho, *The Effects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Labor Supply. Korea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17.
- [10] N.H. Kang, "The Construction of Models of Basic Incomes as of 2012", *The Issues of Basic Incomes and Alternative Society*, pp. 280-325, 2010.
- [11] Bergman, B.R., A "Swedish-Style Welfare State or Basic Income: Which Should Have Priority?", *Politics and Society*, Vol. 32, No. 1, pp 107-118, 2004.